##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80 발의연월일: 2025. 2 7.

발 의 자: 강선영·강대식·유용원

박준태 • 고동진 • 이인선

최수진 · 서명옥 · 한기호

배준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5일에 「군인사법」에서 폐지된 군 영창 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과 인권침해 소지로 2020년 9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「병역법」에 따른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「군인사법」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존치되고 있어 논란 이 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,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5, 제5조 및 제6조).

법률 제 호

###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의5제1항제2호 중 "및 영창(營倉) 기간"을 "기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 무"를 "복무"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영창, 휴가 제한"을 "휴가 제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2조의5(휴직자 등의 전환복무	제2조의5(휴직자 등의 전환복무				
기간 계산 등) ① 다음 각 호	기간 계산 등) ①				
의 기간은 「병역법」 제25조					
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					
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					
산입하지 아니한다.	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	
2. 정직 <u>및 영창(營倉) 기간</u>	2 <u>기간</u>			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			
②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	②				
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					
때와 <u>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</u>	<u>복무</u>				
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					
<u>무</u> 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					
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					
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					
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					
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					
다.	<b>.</b>	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		
제5조(징계) ① 의무경찰에 대한	제5조(징계) ①				
징계는 강등, 정직, <u>영창, 휴가</u>	<u>휴가 제한</u>				
제한 및 근신(謹愼)으로 하고,					

-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2. (생략)
- 3. 영창: 15일 이내의 기간 동<삭 제>안 의무경찰대·함정(艦艇)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(拘禁場所)에 구금하는 것

4. • 5. (생략)

②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,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.

제6조(소청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. <u>다만,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.</u>

 -	 _	 	 	_	 	-	_	 	 	 _	-
 _	 _										

1.·2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4.·5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제6조(소청) ① (현행과 같음)

2	 	
	 <u>&lt;단서</u>	삭제>